

결 정

2018 - 2026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
2.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
3.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
4.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

주 문

매일경제 2018년 1월 4일자 A30면 「노벨상이 밝혀낸 몸과 얼굴이 젊어지는 기술/‘페이스핏」 제목의 광고, 朝鮮日報 1월 6일자 A24면 「노벨상이 밝혀낸 몸과 얼굴이 젊어지는 기술/‘페이스핏」 제목의 광고, 중앙일보 1월 10일자 27면 「노벨상이 밝혀낸 몸과 얼굴이 젊어지는 기술/‘페이스핏」 제목의 광고, 국민일보 1월 17일자 15면 「노벨상이 밝혀낸 몸과 얼굴이 젊어지는 기술/‘페이스핏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매일경제, 朝鮮日報, 중앙일보,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‘호흡교정기’인 ‘페이스핏’을 선전하는 내용이다.

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.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.

그럼에도 광고는 이 ‘페이스핏’을 사용하면 『코골이, 불면, 호흡기능 장애, 비염』 등에 좋으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.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.

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·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·오도하고, 신문 광고의 공

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
강령 4의 (1),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
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

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